

의안번호	2203988
의 퇴 인	김태선의원
회 답 일	2024. 10. 7.
추 계 번호	24B3782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5년마다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억 8,0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억 8,000만원(연평균 3,6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(안 제76조의4)	180	0	0	0	0	180	36

자료: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76조의4 (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)	고용노동부장관은 5년마다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		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또는 조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. 이 경우 자료 제출 또는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(제2항)	재량·의무 규정
		제1항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, 결과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(제3항)	의무규정
2	안 제76조의5 (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)	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여 근로자가 신체적·정신적으로 건강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(이하 “예방교육”이라 한다)을 실시하고,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		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받아야 함(제2항)	의무규정
		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(제3항) 1.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	의무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3	안 제76조의6 (예방교육의 위탁)	2.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률 규정 3. 직장 내 괴롭힘 고충처리 절차 4.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	의무규정
		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예방교육의 내용·방법·횟수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4항)	
		사업주는 예방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(이하 “예방교육기관”이라 한다)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		예방교육기관의 지정 기준, 예방교육기관에 두어야 하는 강사의 수 및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(제2항)	의무규정
		예방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증이나 이수자 명단 등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보관하며 사업주나 피교육자에게 그 자료를 내주어야 함(제3항)	의무규정
		고용노동부장관은 예방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(제4항)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 경우 2.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강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. 2년 동안 직장 내 예방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	
		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예방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함(제5항)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76조의4(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)	○	—
2	안 제76조의5(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)	—	- 미대상 - 개정안은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내용이므로 개정안의 시행으로 인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 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용추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
3	안 제76조의6(예방교육의 위탁)	—	- 미대상 - 개정안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에 대한 내용이므로 개정안의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			시행으로 인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용추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-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기관의 지정·취소와 취소를 위한 청문 등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- 개정안과 유사한 형태로 추진되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살펴보면, 현행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은 사업주로서 하여금 매년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¹⁾ 성희롱 예방 교육을 사업주단체나 노무법인 등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-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은 사업주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²⁾, 2023년 기준 122개소가 지정되어 있음 - 고용노동부가 「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(지침)」에 근거하여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 교육 지정기관을 대상으로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교육 내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고³⁾,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, 개정조항이 시행되어도 현재 고용노동부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용추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

- 1)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
제13조의2(성희롱 예방 교육의 위탁) ①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(이하 "성희롱 예방 교육기관"이라 한다)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
- 2)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
제6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을 지정해야 한다.
1. 사업주단체
 2. 「공인노무사법」 제7조의2에 따른 노무법인
 3. 법 제23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는 민간단체
 4.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이 운영하는 연수·교육 시설
- 3) 점검주체: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
 점검대상: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
 점검주기: 연 1회 이상
 점검방법: 근로감독관이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 현장 점검
 근거규정: 「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(지침)」
 점검내용: 지정요건 충족여부(대상기관의 적정성, 적정강사 보유 여부 등)와 교육의 적정성(교육실적, 교육 내용·방법 등)을 점검
 점검실적: 2023년 기준 총 108개 기관을 점검하여 적격 강사 미보유 기관, 강사 보수교육 미실 시 등 6개 기관에 시정지시 또는 행정지도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 부칙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의 시행으로 ‘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’의 실시에 따라 장래에 발생할 실태조사 비용은 고용노동부가 시행한 유사 실태조사(일·가정 양립 실태조사) 소요 비용을 준용하여 추계
 - 본 추계서는 실태조사 비용이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며, 개정안에 따라 조사 주기는 5년으로 산출

※ 일·가정 양립 실태조사

- 조사개요: 모성보호 및 일·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도입실태를 파악하고자 업종별, 사업체 규모별로 추출된 사업체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임신 및 출산 지원제도의 활용실태 등에 대해 조사
- 소요재정: 2022년 기준 1억 8,000만원
- 근거법률: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3조⁴⁾

[표 2] 일·가정 양립 실태조사 시행현황

구분	내용
조사주체	한국여성정책연구원
조사목적	모성보호 및 일·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도입실태 파악
모집단	전국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인사담당자
조사주기	1년
예산	1억 8,000만원(2022년 기준)

자료: 고용노동부

4) 제6조의3(실태조사 실시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남녀차별개선, 모성보호, 일·가정의 양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, 시기,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
- 추계 결과,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비용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1억 8,0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3]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비용 추계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비용	180	0	0	0	0	180

자료: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 결과는 재량규정인 재정수반요인에 대한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- 본 추계 결과는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남 희	배아형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남 희	02-6788-3737	nhee@nabo.go.kr